

책임광물 정책 (Responsible Minerals Policy)			
최종 수정일	'24. 05. 31.	최초 제정일	'24. 05. 31.
Rev.	0	표준번호	-
담당부서	원료구매1그룹		
검토자	원료구매1그룹장		
승인자	대표이사 사장		

목적

본 정책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벌, 반군단체들의 자금원 역할을 해온 3TGs[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와 같은 분쟁광물과 채굴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이슈가 제기되는 코발트 등과 같은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여,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책임광물'만을 사용한다는 포스코퓨처엠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에 적용된다. 포스코퓨처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 계약사, 공급업체, 서비스업체 등 비즈니스 전 과정의 파트너사를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기본원칙

1. 광물의 채굴과정에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3TGs와 코발트(Cobalt) 등,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광물을 사용하는 협력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3. 「미국 도드-프랭크법」, 「EU 분쟁광물 규칙」 등 분쟁광물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3TGs 및 코발트 공급망의 위험을 식별하고 경감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사(Due diligence)방침을 제공하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 Affected and High-Risk Areas)'에 따른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협력사들이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RMI)의 책임광물보증절차(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RMAP)인증이나 이와 동등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련소로부터 3TG 및 코발트 등을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포스코퓨처엠 공급망에 속한 제련소 중 RMAP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련소에 대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실행방안

인권보호와 분쟁위험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자원 조달을 위해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5단계를 기반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광물이 채굴되도록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광물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광물 채굴, 거래, 수출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확인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관리 체계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4.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 내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제련소에 대해 실사를 실행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5. 실사결과를 매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